

『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
- 외국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각종 기초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보건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 적응하도록 하여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거주 외국인의 지위(안 제3조)
-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(안 제7조 내지 제12조)
-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(안 제13조)
-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14조 및 제15조)
- “구미시 세계인의 날’ 지정 및 다문화 주간 설정(안 제16조)
- 시정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등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7조 내지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-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: 행정자치부
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외국인 지원단체 민간위탁 및 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” 기능의 재검토, 외국인 축제관련 행사개최 중복 등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를 지양하고 더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제127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한 건임
- 주요 내용은
 -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
 - 시장이 거주외국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,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상담, 생활편의제공 및 구호체계 확립, 문화·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”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한편 “세계인의 날” 및 “다문화 주간”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.
-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제8조에서 규정한 “구미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”의 기능에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은 지원 시책의 자문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업무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과 「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서 지원 근거와 외국인 단체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,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동체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,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가정과 지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